#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57

발의연월일: 2022. 1. 11.

발 의 자:이해식·김수흥·김정호

백혜련 · 서영교 · 오영환

윤준병 • 이수진 • 이학영

인재근 · 전재수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시장사용료 상한(0.55%) 등으로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속적인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 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을 "제63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제한) ①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2
조제1항, <u>제13조제3항</u> , 제16	제13조제3항, 제15조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u>제2항</u>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	

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③ (생 략)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 2.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3. <u>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u> : 20	3. <u>제63조제5항</u>
23년 1월 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